



발행일 2020년 05월 29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현안분석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노성준*

- 01 I. 서론
- 02 II.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 08 III. 해외사례
- 10 IV. 향후과제

요약

□ 지난 5월 20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함
-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 둘째,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셋째,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함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788-4703
ysamy0904@assembly.go.kr

I. 서론

-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2009년경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약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임
 -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논의되던 2011년,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안(대안)」에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특례 조항”이 있었음
 -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음
 -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의 창작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과제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¹⁾
 - 프로젝트 단위의 단속적(斷續的) 활동으로 인한 빈번한 실업상태, 높은 겸업비율(42.6%)을 보이는 고용형태²⁾ 등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고용보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뒷받침되어 왔음
 - 또한, 평균 연 1,281만원에 불과한 예술활동 개인수입과 낮은 공적연금 가입률(53%) 및 고용보험 가입률(24.1%)은 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경제상황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예술 활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요 논의사항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4.22.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2)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2018.12.

II.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현황

1. 고용보험제도 개관

가. 고용보험의 개념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함³⁾

- 실업보험은 단순히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임

나. 고용보험료 산정 및 요율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표 1 | 고용보험료율

(단위: %)

구분	'06.1.1. 이후		'11.1.1. 이후		'13.1.1. 이후		'19.1.1. 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0.55	0.55	0.65	0.65	0.8	0.8
고 용 안 정 ·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150명 미만 기업	0.25		0.25		0.25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45		0.45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	0.65		0.65		0.65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지자체	0.85		0.85		0.85		0.85

※ 자료: 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0.

3) 고용노동부, 「2019 고용보험백서」, 2019.

2.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경과

가. 주요 추진경과⁴⁾

-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 초기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 및 지원인원의 한도로 인해 예술인의 전반적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그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가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이 시작되었음
-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며, 2018년 8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의결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영화, 뮤지컬, 연극 분야의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과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대중음악, 국악, 무용, 만화, 방송 등 분야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음

나. 법안 발의 및 의결

- 제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은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음
- 먼저, 2016년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음
 -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안은 자영업자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임의가입” 방식임
 -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다음, 2018년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해 “당연가입”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임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임

4) 양혜원 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2018.

- 2020년 5월 1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장석춘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을 통합조정하여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5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당초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음
-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3.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논의사항

가. 고용보험 방식

- 예술인 고용보험의 방식은 “당연가입” 방식과 “임의가입” 방식으로 구분됨
 - 당연가입 방식은 보험재정의 확보와 포괄적인 안전망의 구축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고용보험 대상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음
 - 이에 반해 임의가입 방식은 보험료 납부로 인한 예술인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재정의 확보가 어려우며 가입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 초기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었으나, 2018년 정부는 당연 가입 방향으로 전환⁵⁾하였으며, 최근에 통과된 법안도 당연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

나. 적용 대상

- 고용보험 적용의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임

[표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적용 제외
내용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①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②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자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8.6.

□ 적용 대상에 관해 향후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가 있음

-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⁶⁾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2020년 5월 4일 기준, 예술인 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는 77,731명임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은 가장 좁은 범위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의 범위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바탕으로 일을 하지만 예술 활동 증명을 하지 못한 예술인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용역 계약을 예술 활동 증명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음⁷⁾

□ 둘째, 문화예술 용역 계약에 있어 제3자 고용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계는 도제식 운영이나 팀별 운영의 관행에 따라,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제 용역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있을 수 있음
- 제3자와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 공동창작 내지 팀이 도급사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할 때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⁸⁾
-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와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음

다. 용역의 범위 설정

□ 문화예술용역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勞務)를 의미함

□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와 세부기준은 분야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영화, 뮤지컬, 연극, 대중음악,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별로 용역의 형태, 종사자의 특성, 계약 관행 등을 파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예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것으로 봄

6)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④ (생략)

7) 서우석, 「주요국의 예술인 고용보험 사례와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한정애의원·고용노동부 주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18.7.5.

8) 전병유 외,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구용역보고서, 2019.

라. 보험료와 수급조건

- 고용보험료는 통과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의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2018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수 기준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65%씩 납부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음
- 수급조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표 3 |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단기예술인에 관한 사항은 생략
 ※ 자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 실업급여 수급액 및 지급일

-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1년간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 하한액은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임
- 지급일(소정급여일수)은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른데, 현행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까지임

4.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

-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은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적용의 전단계로서 의의를 가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예술인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보험 논의에 검토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계약기간, 실제로 용역 수행에 참여한 인력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⁹⁾
- 2018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자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44.7%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제도가 안착되면서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 잡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다만, 비용 증가 등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해 계약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도 볼 수 있음

□ 셋째,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제21대 국회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이 지원대상이며,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가 지원대상에 해당됨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를 지원하며,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함

[표 4]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액

구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 상한액	월 43,650원	32,310원	5,740원	32,310원	7,540원
		(합계) 38,050원		(합계) 39,850원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지원	2020년 최저임금 월 1,795,310원 기준 납부보험료 각 40% 지원			

※ 주1: 예술인 1인, 1개월 기준

※ 주2: 고용보험료율 근로자 0.8%, 사업자 1.05% 적용

※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2020.1.

- 그런데, 이전까지 고용보험은 근로자인 예술인만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역시 근로자인 예술인 및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었음

9) 김혜원, 「주요국의 예술인 고용보험 사례와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한정애의원·고용노동부 주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2018.7.5.

-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번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Ⅲ. 해외사례¹⁰⁾

1. 프랑스

- 프랑스의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 구조는 크게 “사회보험제도(Régimes d’assurance sociale)”와 “사회부조(Assistance sociale)”고 구성되며, 이 중 사회보험제도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사회보장의 공공제도”와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실업보상레짐”으로 구분됨
 - 실업보상레짐은 일부 특수 직업을 위한 특별조항을 통해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수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 특히 “엔테르미탕”은 공연영상예술 분야의 예술인과 기술직을 위한 실업보험제도를 말하는데, 실업보험 노사협정 부칙 제8장과 제10장¹¹⁾에 특별한 실업보험을 규정하고 있음
- 엔테르미탕의 적용대상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뉨
 - 부칙 제8장에 의해 시청각물 제작, 영화제작, 음향 편집, 창작·행사 진행을 위한 기술지원, 라디오 방송, 사설공연 및 지원금 수혜 공연, TV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분야와 관련한 기술직 근로자가 해당됨
 - 부칙 제10장에서는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8개 장르에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실연가 및 창작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9.05%, 2.4%를 부과¹²⁾하여 임금의 총 11.45%가 실업보험금으로 적립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12개월 동안 최소 507시간, 수급기간은 243일(8개월)임
- 엔테르미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통한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노사는 물론 프랑스 사회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제도임
 - 다만, 엔테르미탕의 실업보험료는 연간 2~4억 유로인 반면, 매년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은 10~13억 유로로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겪고 있으며, 피보험기간, 수급기간 산정 등에 있어 사용자단체와 노조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10) 양혜원 외, 앞의 보고서

11) 프랑스 법률정보 사이트(<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38868382&dateTexte=20190826#LEGISCTA000038912576>, 최종검색일 20.5.21.)

12)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http://plmpl.fr/c/WNhgJ>, 최종검색일 20.5.21.)

2. 독일

- 일반 사회보험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성격을 가진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1981년 「예술인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KSVG)」을 제정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예술과 출판업 종사자들을 위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내용으로 한 “예술인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 KSV)” 제도를 마련하였음
 - 이는 프랑스와 달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예술인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 의료, 요양보호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예술인사회보험은 “예술인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판단한 후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를 점검함
- 예술인사회금고에서 가입대상으로 보는 예술인은 음악, 미술, 공예, 공연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또는 이를 교육하는 자임
 - 수혜대상이 되는 예술직종을 400여개로 분류한 후 이 중 약 223종의 직업에 예술인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연간 최소 수입이 3,900유로가 넘는 예술인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예술활동 수입이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하면 예술인사회보험 가입의무에서 면제됨
 -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총소득의 1/6보다 적을 때도 대상에서 제외됨
- 예술인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과세소득의 약 35%로, 피고용자(예술인)가 50%, 저작권사용자¹³⁾가 30%, 연방보조금 20%로 분담해서 납부함
 - 저작권사용자가 없는 예술인의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내야 할 30%의 보험료를 연방보조금에서 지원함
- 종속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들에게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가입 예술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지원보험금도 증가하여 연방정부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13) 예술인 및 출판인의 작품을 시장에서 사용하는 주체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 프리랜서 작가를 고용한 출판사나 화가를 고용한 회랑,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방송사, 서커스단이 해당됨

IV. 향후과제

1.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조성 및 적극적 홍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 장르 중 만화 분야를 예로 들면, 사업체 담당자들이나 작가들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추진 내용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적용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음¹⁴⁾
 -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해 본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 또한,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수준이 낮아 미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보다 당장의 보수 수준의 감소를 우려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각 영역마다의 특수성과 맥락을 충분히 공유하는 한편, 도입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보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 최근에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서면계약의 문화와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일부 장르나 저예산 예술작품의 경우 계약 체결이 없거나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음
 - 상당수의 계약서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납품기한만을 제시하는 경우, 업무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를 추산하는 것도 어렵게 계약금액이 산정되고 있음¹⁵⁾
- 서면계약의 활성화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인 동시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므로, 서면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예술인 복지법」¹⁶⁾에 따라 보급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4) 이상규 외, 「만화분야 문화예술용역계약 범위설정 방안 기초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보고서, 2019.

15) 양혜원 외, 앞의 보고서

16)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행정 부담이 발생하게 됨
 - 자격취득 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 보험료 원천징수 등 고용보험 관리업무를 위한 인력 채용이나 전반적 인건비 상승의 가능성이 있음¹⁷⁾
-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상담·안내, 사무 대행, 보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확충과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봄

4.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올해 1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술인 등의 범위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험료율도 정해야 함
- 이와 함께 「예술인 복지법」 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규 정비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 구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5.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방안 마련

- 기금의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앙테르미탕과 독일 예술인사회보험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 운영의 안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 문화산업 유통, 플랫폼 사업의 수익에서 출연하는 방식 등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예술인의 생계 보장에 특화된 금고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야 할 것임

17) 양혜원 외, 앞의 보고서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8.6.
- * 고용노동부, 「2019 고용보험백서」, 2019.
-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4.22.
- * 김혜원, 「주요국의 예술인 고용보험 사례와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한정애의원·고용노동부 주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2018.7.5.
-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2018.12.
- * 서우석, 「주요국의 예술인 고용보험 사례와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한정애의원·고용노동부 주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18.7.5.
- * 양혜원 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2018.
- * 이상규 외, 「만화분야 문화예술용역계약 범위설정 방안 기초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보고서, 2019.
- * 전병유 외,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구용역보고서, 2019.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2020.1.
- * 프랑스 법률정보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38868382&dateTexte=20190826#LEGISCTA000038912576>, 최종검색일 20.5.21.)
- *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http://plmpl.fr/c/WNhgJ>, 최종검색일 20.5.21.)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36호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20.5.27.	김창호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2020.5.19.	최병근
제134호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2020.5.4.	허민숙
제133호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2020.4.28.	김예성
제132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2020.4.7.	정준화
제131호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2020.4.3.	최미경
제130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4.2.	박진우
제129호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4.1	김경민
제128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2020.3.30.	조규범 이재영 배정훈
제127호	적합성평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3.30.	김종규
제126호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3.25.	장영주
제125호	고액·상습채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2020.3.23.	임언선
제124호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2020.3.18.	황현영
제123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2020.3.9.	이만우
제122호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020.3.5.	허민숙
제121호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2020.3.3.	허민숙
제120호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2020.3.2.	이덕난
제119호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2020.2.24.	김선화
제118호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20.2.20.	유제범 김경민
제117호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0.2.12.	최미경

제137호

NARS

현안분석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